

●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-043호

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5월 31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『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』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감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의거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
- 국세징수법 제2장 징수, 제3장 체납처분 등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
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)
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의 3% 가산금과, 매월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,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(재산 압류 추심 조치 등)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, 고지서 재발급 후 납부할 수 있음)

(단위 : 원)

연 번	위반법	고지번호	체납자	실명번호 (사업자번호)	세목별 부과금액		체납자 주소
					과태료	가산금	
1	단말기 유통법	017822000453 0000010	(주)잔디피플	110111-669***0 (753-88-00932)	4,500,000	135,000	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89, 107호(상계동, 하이베라스)